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투자신탁(H)[대출채권]

2. 집합투자계약 변경 사유 : - 모투자신탁의 펀드명칭 변경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조항 변경(모투자신탁 투자비중 변경)
 - 투자대상자산 조항에 환매조건부매수 추가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등

3. 집합투자계약 변경시행일 : 2015년 5월 26일

4. 집합투자계약 변경 주요 내용 :

변경전	변경후
제 3 조(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②<생략> ③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대출채권](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 (이하 "모투자신탁"이라 한다)	①~②<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스트스프링 미국뱅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피피엠 아메리카 (PPM America) (이하 "모투자신탁"이라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신설>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p>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p> <p>1. 제3조제3항제1호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90% 이상으로</u> 한다.</p>	<p>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p> <p>1. 제3조제3항제1호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u>80% 이상으로</u> 한다.</p>
<p>제41조(환매수수료)</p>	
<p>①~②<생략></p> <p>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u>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u>" (클래스 C-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u>수익증권저축약관</u>" (클래스 C-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p>	
<p>①<생략></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신설></p>	<p>①<현행과 같음></p> <p>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5. <u>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u>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u>" (클래스C-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u>수익증권저축약관</u>" (클래스C-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